

##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84
----------	------

제출년월일 : 2007년 9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 1. 제안이유

- 교육 문제가 지역 인구 감소의 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육 발전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보조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보조기준액을 현행 지방세의 2% 범위에서 5% 범위까지 확대(안 제2조)
-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3조)
  -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 특기적성 및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학교 체육·예능·기능 진흥사업, 교육 발전 및 학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여 사업 범위를 구체화 함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2명을 증원 함(안 제5조)
  - 교육분야에 경험과 의견을 갖춘 자 2인
- 보조금 신청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8조)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5. 근거법령 : 불임

- 첨부 1. 근거법령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3. 참고자료(자치단체별 지원요율) 1부

##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2% 범위”를 “5%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 및 국도비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
2.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3. 학교 체육 및 예능, 기능 진흥사업
4. 지역교육 발전 및 학력 제고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사업
5. 학교의 급식시설 · 설비사업
6.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등 교육시설 개선사업
7.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8.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9.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 문화공간 설치사업

제5조제1항중 “9인”을 “1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중 “교육공무원”을 “교육관계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 분야에 경험과 의견을 갖춘자 2인

##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2% 범위”를 “5%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 및 국도비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
2.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3. 학교 체육 및 예능, 기능 진흥사업
4. 지역교육 발전 및 학력 제고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사업
5. 학교의 급식시설 · 설비사업
6.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등 교육시설 개선사업
7.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8.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9.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 문화공간 설치사업

제5조제1항중 “9인”을 “1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중 “교육공무원”을 “교육관계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 분야에 경험과 의견을 갖춘자 2인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b> ①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u>2%</u>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p> <p><u>&lt;단서 신설&gt;</u></p>	<p><b>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b> _____</p> <p>_____</p> <p>_____ 5%범위 _____</p> <p>②_____</p> <p>_____</p> <p>다만,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 및 국도비지원 사업은 제외한다.</p>
<p><b>제3조(보조사업의 범위)</b>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학교의 급식시설 · 설비사업</u></li> <li><u>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u></li> <li><u>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u></li> <li><u>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u></li> <li><u>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 문화공간 설치사업</u></li> <li><u>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u></li> </ol>	<p><b>제3조(보조사업의 범위)</b>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u></li> <li><u>2.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u></li> <li><u>3. 학교 체육 및 예능, 기능 진흥사업</u></li> <li><u>4. 지역교육 발전 및 학력 제고를 위한 연구 활동 지원사업</u></li> <li><u>5. 학교의 급식시설 · 설비사업</u></li> <li><u>6.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등 교육시설 개선 사업</u></li> <li><u>7.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u></li> <li><u>8.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u></li> <li><u>9.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 문화공간 설치사업</u></li> </ol>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u>9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생략)</li> <li>3. 제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u>교육공무원</u> 2인 및 학부모 2인</li> </ol> <p>&lt;신설&gt;</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p> <p>&lt;단서 신설&gt;</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_____ <u>11인</u> 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_____ <u>교육 관계공무원</u> _____</li> </ol> <p>4. <u>교육분야에 경험과 의견을 갖춘 자 2인</u></p> <p>④ _____</p> <p>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제7조(회의) ① (생략)</p> <p>② 정기회는 매년 <u>예산편성시</u>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p> <p>③ (생략)</p>	<p>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u>예산확정후</u> _____</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보조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초·중학교는 제천시교육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략)</li> <li>② (생략)</li> </ol>	<p>제8조(보조의 신청 등) ①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액을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교육장에게 검토의견을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li>② (현행과 같음)</li> </ol>
<p>제12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_____</p> <p>_____ <u>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u> _____</p> <p>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 □ 관련 법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2007.7.20 법률 제8540호]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6.12.30>

1.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⑤ 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⑥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⑦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전문개정 1982.4.3]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0.12.27 대통령령 1702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7, 2000.12.27>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개정 2000.12.27>)**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 (보조의 신청등)**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목적의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27]

부칙 <제14981호, 1996.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1호, 1998.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25호, 2000.12.27>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7 - 1040호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8. 9.

제 천 시 장

###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조례명 :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 교육 문제가 지역 인구 감소의 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육 발전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보조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보조기준액을 현행 지방세의 2% 범위에서 5% 범위까지 확대(안 제2조)
-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3조)
  -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 특기적성 및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학교 체육·예능·기능 진흥사업, 교육 발전 및 학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여 사업 범위를 구체화 함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2명을 증원 함(안 제5조)

- 교육분야에 경험과 의견을 갖춘 자 2인
- 보조금 신청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안 제8조)

####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8월 30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평생학습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732, FAX 641 - 5739 담당자 : 장석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결과

【의견제출자 : 제천교육청(교육장 김영호)】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검토결과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 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 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제5호에 면이하 급식비 지원사업 추가 요청 ⇒ 요청사유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학부모 의견 반영, 동법 제23조의 급식비 지원이 가능함 을 들어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부분 만이 아닌 기존 면 이하 초등학교에 지원하던 급식비의 계속적 지원이 필요함. - 2009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면이 하 지원이 100% 이루어지기 전까지 는 계속적 지원이 필요	•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007. 5. 25 조례 제783호)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 2009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 원이 되는 사항으로 ⇒ 수정 불필요
1.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		
2.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3. 학교 체육 및 예능, 기능 진흥사업		
4. 지역교육 발전 및 학력 제고를 위 한 연구활동 지원사업		
5.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6.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등 교육시 설 개선 사업		
7.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 체개발사업		
8.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9.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 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검토결과
<p>제8조(보조의 신청 등)①시장은 당해 연도 예산액을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교육장에게 검토의견을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제12조(정산검사및감독)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보조의 신청 등) ①시장은 당해 연도 예산액을 교육장에게 통지하고 교육장은 각급학교의장(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 받아 시장에게 일괄 제출하되, 교육장은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p> <p>제12조(정산검사및감독)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장에게 검토의견을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의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 수정 불필요</li> </ul>
	<p>⇒ 제출사유</p> <p>□교육경비 관련업무 창구 일원화(2007년도 예산운영계획-충청북도교육청 2007.1.10.)와 관련 지역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학교에 지원되는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를 총괄 운영토록 함</p> <p>- 교육비특별회계 사업계획과 연계 검토 필요</p> <p>□교육청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각급학교(초, 중, 고, 특수)에 지원되는 각종사업 예산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합성을 검토하여 시청으로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p>□교육청에서 창구를 일원화 함으로써 각급학교에 교육경비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음</p>	

## □ 참고자료

### 자치단체별 교육경비 지원기준요율

자치단체명	관련조례 등	지원요율	지방세입액 (천원)	교육기관보조금예산 (천원)
□ 충북				
청주시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	181,394,433	2,051,170
충주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	48,777,441	287,000
제천시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	35,514,959	600,000
청원군	청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	57,200,000	52,000
괴산군	(조례 없음)		8,243,000	351,920
음성군	(조례 없음)		31,090,792	619,000
□ 서울				
종로구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3%	65,588,419	1,300,000
강남구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3%	256,010,747	7,700,080
□ 경기				
수원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예산의 범위	386,353,000	11,001,917
이천시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예산의 범위	86,799,000	1,217,760
□ 강원				
원주시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3%	87,255,025	407,000
동해시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4%	25,746,131	1,029,846
태백시	태백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	12,700,000	524,000
□ 충남				
공주시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3%	32,750,000	901,176
서산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3%	61,618,892	2,126,807
□ 전북				
전주시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3%	160,541,000	3,330,000
진안군	(조례 없음)		4,440,367	624,249
□ 전남				
여수시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3%	136,723,000	8,538,229
순천시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61,019,977	2,525,668
광양시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	3%	92,977,000	7,487,999
목포시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7%	53,600,000	3,314,219

자치단체명	관련조례 등	지원요율	지방세입액 (천원)	교육기관보조금예산 (천원)
□ 경북				
경주시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3%	91,000,000	876,000
안동시	안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3%	35,632,157	948,366
영주시	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3%	25,160,380	1,334,656
□ 경남				
마산시	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5%	123,767,000	4,070,000
사천시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한규정 없음	26,700,000	1,184,350
양산시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한규정 없음	103,200,000	2,449,845
남해군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한규정 없음	7,623,000	5,255,000
합천군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10%	9,530,000	221,600

※ 일부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학교급식비 지원액 포함

※ 지방세입액은 세외수입 제외